

서울고등법원 2013. 10. 15 선고 2013나2004744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37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15 선고 2013나200474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9 선고 2012가합506899 판결

전문

원고,항소인겸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항소인 1.c주식회사

피고,항소인

2.d

피고,항소인 1.c주식회사

피고,항소인

2.d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9.선고 2012가합506899 판결

변론종결 2013.9.3.

판결선고 2013.10.15.

주 문

1.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주식회사,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474,888원 및 그 중 225,474,679원에 대하여 2011.12.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제1심 공동피고 b와 피고 d 사이에 2011.8.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d는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와 2011.8.24. 접수 제8971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청구취지 나.의 1), 2)와 같은 판결

[피고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중 피고 c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아래 2항. 기재와 같은 부분을 고쳐 쓰고 아래 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중 제1,3,4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피고 주식회사 a"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로 , "피고 회사"를 "a"로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로 모두 고쳐 쓴다.

◎ 제5면 18~20행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618,067,557원의 대출금채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160,000,000원의 채무 등 합계 1,641,781,837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약 703,386,283원의 대출금 등 채무를 비롯한 다수의 채무가 있어"로 고쳐 쓴다.

◎ 제6면 제1행~5행을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상륙구청, 원미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 제7면 제12행 "2011.6.16." 을 "2011.6.17."로 고쳐 쓴다.

◎ 제11면 제6행 "위 제2항 기재 금원 중" 을 "a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채무액인 225,474,888원(각 대위변제금 잔액 합계 225,474,679원 + 확정손해금 209원) 중"으로 제11행 "이 판결 선고일인 "을 "제1심판결 선고일인"으로 고쳐 쓴다.

◎ 제13면 제8행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을라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부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로 고쳐 쓴다.

3.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원고는 2011.6.17. a와의 사이에 제1신용보증약정에 대한 기한 연장 약정을 체결할 당시 a가 제출한 a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확인하였는바, a가 분할합병 사실이 등기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최고로 볼 수 있고, 원고는 분할합병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분할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 연장 계약 체결 당시 a의 분할합병 사실이 등기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 분할합병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원고가 분할합병 사실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상법 제530조의 9조 제4항, 제527조의 5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적인 최고는 분할합병이 발생한 사실 뿐 아니라, 분할합병에도 불구하고 분할합병 전에 발생한 회사 채무에 관하여 수혜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기로 정하였다는 사실까지 알릴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단순히 분할합병 사실만이 등기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원고에게 제출되어 원고가 이를 확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자이 원고에 대한 개별적인 최고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 판사 권○○ 판사 이

목 록

(1동 건물의 표시)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8층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외 1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천시 원미구 F 대 732.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8층 제803호 철근콘크리트조 97.20㎡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732.6분의 19.26. 끝.